

교습소설립·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 1일
교습자	성명	주민등록번호	
	주소 (전화번호:)		
교습소명		교습과목	
신고번호		최초신고일	
재발급 사유	[] 잃어버린 경우 [] 못 쓰게 된 경우		
분실사유 (잃어버린 경우에만 작성합니다)			
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습소설립·운영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교습자)

(서명 또는 인)

○○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

신청인(교습자) 제출서류	1.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2. 교습소설립·운영등록증명서(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교습소 신고(변경신고)대장	

처리절차		
재발급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 접수 및 검토 처 리 기 관 (교육지원청)	→ 재교부 처 리 기 관 (교육지원청)